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상정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)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·처리하여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하여 설립·운영 중인 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”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,
-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”의 가입 요청(구로구 기획예산과-1803(2010.10.13)호)에 대하여 전 회원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구로구청장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토록 함(안 규약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강서구·양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·양천구·구로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경기도 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김포시장, 인천광역시 계양구·부평구·서구청장·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·양천구구청장”을 “경기도 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김포시,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·부평구청장·서구청장·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·양천구청장·구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